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011호

제출년월일 2022. 8. 18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2년 08월 1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제정 2021.7.27. 시행 2022.4.28.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지역상생 발전과 자생적·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상의 조례 위임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'젠트리피케이션'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상생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